

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

커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
2024. 6. 21(금) 10:00

제250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

검 토 보 고 서

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

(교통건설국 소관)



복지건설위원회

전문위원 추병수

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

검 토 보 고

I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534호
- 나. 제 출 자 : 금천구청장
- 다. 제출일자 : 2024. 5. 28.
- 라. 회부일자 : 2024. 5. 28.

II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제150조, 「지방회계법 시행령」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금천구 2023회계연도 세입·세출 결산에 대하여 금천구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.

III. 참고사항

○ 관련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50조, 「지방회계법 시행령」 제10조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8조

○ 관련서류 : 2023회계연도 결산서(안)

IV. 2023회계연도 교통건설국 결산

1. 일반회계 결산 총괄

가. 세입 총괄

(단위:원)

구분	예산현액	징수결정액(A)	세입결산액(B)	징수율 (B/A)
계	11,785,982,000	13,225,818,710	12,541,789,710	94.8%
교통행정과	2,924,448,000	3,507,443,530	2,906,600,000	82.8%
건설행정과	2,113,634,000	2,260,430,360	2,177,244,890	96.3%
도 로 과	1,484,800,000	1,517,745,820	1,517,745,820	100%
치 수 과	5,263,100,000	5,940,199,000	5,940,199,000	100%

나. 세출 총괄

(단위:원)

부서명	예산현액(A)	지출액(B)	다음연도 이월액	집행잔액	
				금액	집행률 (B/A)
계	36,844,807,670	27,210,652,690	4,648,024,340	4,942,280,310	73.8%
교통행정과	3,316,673,000	3,052,697,250	50,000,000	195,952,780	92.0%
건설행정과	4,766,446,690	585,846,770	0	4,180,599,920	12.2%
도 로 과	14,370,409,950	11,700,495,270	2,360,202,810	307,995,830	81.4%
치 수 과	14,391,278,030	11,871,613,400	2,237,821,530	257,731,780	82.4%

다. 집행잔액

(단위 : 원)

부서명	예산현액	집행잔액	사유별		
			보조금 정산잔액	예산절감액	계획변경등 집행사유미발생
			낙찰차액	지출잔액	예비비
계	36,844,807,670	4,942,280,310	51,518,360	0	41,444,000
			129,514,940	4,719,803,010	0
교통행정과	3,316,673,000	195,952,780	32,098,910	0	35,220,000
			0	128,633,870	0
건설행정과	4,766,446,690	4,180,599,920			6,224,000
				4,174,375,920	
도로과	14,370,409,950	307,995,830	19,409,860	0	0
			129,437,760	159,148,210	0
치수과	14,391,278,030	257,731,780	9,590	0	0
			77,180	257,645,010	0

2. 다음연도 이월사업비

(단위:천원)

구분	계		명시이월		사고이월	
	건수	금액	건수	금액	건수	금액
계	14	4,648,024	6	1,760,291	8	2,887,733
교통행정과	1	50,000	1	50,000	-	-
도로과	8	2,360,203	3	318,291	5	2,041,912
치수과	5	2,237,821	2	1,392,000	3	845,821

3. 예산의 전용

(단위: 천원)

구분	부서별	건수	금 액	사유
계		2	26,800	
전용	치수과	2	26,800	-무기계약직 근로자 공백으로 기간제 근로자 채용 인건비

4.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·세출 결산

가. 세입결산

(단위: 원)

구분	예산현액	징수결정액(A)	세입결산액(B)	징수율 (B/A)
계	34,952,138,540	42,244,595,023	35,185,061,013	83.2%
세외수입	5,321,203,000	12,617,282,750	5,557,748,740	44.0%
조정교부금	175,000,000	175,000,000	175,000,000	100%
보조금	135,680,000	132,800,000	132,800,000	100%
보전수입등 맞내부거래	29,320,255,540	29,319,512,273	29,319,512,273	100%

나. 세출결산

(단위: 원)

부 서 명	예산현액 (A)	지 출 액(B)	다음연도 이 월 액	집 행 잔 액	
				금 액	집행률 (B/A)
주차관리과	34,952,138,540	11,411,980,310	3,444,588,110	20,091,830,120	32.6

다. 예산의 전용 : 해당사항 없음

라. 다음연도 이월사업비

(단위:천원)

구 분	계		명시이월		사고이월	
	건수	금 액	건수	금 액	건수	금 액
계	3	344,588	0	0	3	3,444,588
주차관리과	3	3,44,588	-		3	3,444,588

5. 기금 결산

(단위:원)

구 분	전년도말 조성액(A)	당 해 연 도 증 감 액			당해연도말 조 성 액
		계B(C-D)	조성액(C)	사용액(D)	
계	3,824,363,719	62,300,230	2,566,119,171	2,212,680,040	4,177,802,850
옥외광고발전기금	1,133,678,660	△132,942,540	148,246,630	281,189,170	1,000,736,120
도로굴착복구기금	2,690,685,059	486,381,671	2,417,872,541	1,931,490,870	3,177,066,730

6. 성과 보고

(단위: 천원)

실국명	성과목표						결산액		
	전략 목표수	정책 사업목표		성과달성도			결산액	전년도 결산액	비교증감
		개수	지표수	초과 달성	달성	미달성			
계	1	6	15	3	12	0	60,793,719	35,114,370	25,679,348
교통건설국	1	6	15	3	12	0	60,793,719	35,114,370	25,679,348

가. 주요성과

<input type="checkbox"/> 구민이 편리한 교통 인프라 구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교통안전(편의)시설물 개선 및 유지관리(교통표지판 정비 : 146개, 온열의자 설치 : 19개소 등) ○ 노인보호구역 및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정비 ○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: 11,952만원(징수율 94.21%)
<input type="checkbox"/> 주민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행복주차 도시 구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주차공유사업 추진율 : 177.8%(거주자우선주차 공유 6,941건 /민간 부설주차장 공유 440면) ○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수용률 : 60%, 과태료 징수율 : 27.7% ○ 사업용차량 행정처분율 : 53.3%
<input type="checkbox"/> 거리가 아름다운 깨끗한 도시 조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독산로 지중화사업 및 저층주거지 공중케이블 정비 ○ 불법 광고물 정비 : 18,509건,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: 14,882건
<input type="checkbox"/> 구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기반 조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급경사 도로 등 제설취약구간 도로열선 설치 등 맞춤형 제설대책 추진 ○ 도로 확장을 통한 보조간선도로 기능 회복 및 도로(보도) 정비
<input type="checkbox"/> 집중 호우 맞춤형 전략 및 환경친화적 안양천 조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노후 하수관거정비(1,072m), 하수도 준설(132km), 펌프장 등 시설물 안전점검(60회) ○ 안양천 시설물 및 편의시설물 유지관리 : 총111건

나. 정책사업목표 현황

(단위 : 원)

정책사업목표	성과 지표수	달성 지표수	단위 사업수	결산액
구민이 편리한 교통인프라 구축	3	3	5	1,334,563,400
주민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행복주차 도시 구현	3	3	4	10,180,957,920
거리가 아름다운 깨끗한 도시를 조성한다	2	2	4	484,121,570
구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미래 도로기반을 조성한다.	3	3	6	10,820,364,390
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풍수해 안전대책 추진	3	3	3	5,962,766,740
주민과 환경을 어우르는 안양천 조성	1	1	1	2,451,870,540

VI. 검토의견

1. 일반회계 세입·세출 결산

- 2023회계년도 교통건설국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125억 4,178만원으로 징수를 94.8%이며
- 일반회계 지출액은 272억 1,065만원으로,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734.8%이며, 다음연도 이월액은 46억 4,802만원이며, 집행잔액은 49억 4,228만원임.

2. 다음연도 이월사업비

- 「지방재정법」제50조에 따른 교통건설국 이월사업비 내역을 보면
 - 명시이월은 총 6건 17억 6,029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음.
 - 사고이월은 총 8건 28억 8,773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음.

3. 예산의 전용

- 「지방재정법」 제49조 규정에 따른 교통건설국의 예산전용은
치수과 2건 2,680만원을 전용하였음.

4.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·세출 결산

- 세입결산 내역은 징수결정액은 422억 4,459만원이며
세입결산액은 351억 8,506만원임.
세출예산의 지출액 114억 1,198만원이며, 집행잔액은 200억 9,183만원임.

- 주차장 특별회계 이월사업 내역을 살펴보면,
 - 사고이월 3건 34억 4,458만원이 이월 되었음.

5. 기금 결산

- 2023회계연도 교통건설국 소관 기금은 2개이며,
 - 전년도말 조성액은 38억 2,436만원이며
 - 당해연도 증감액은 6,230만원으로
 -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41억 7,780만원임.

6. 성과 보고

- 전략목표 : 구민이 편리하고 쾌적한 교통, 건설도시 금천 조성

교통건설국은 1개의 전략목표와 15개의 정책사업목표를 정하였고, 성과지표 15개를 모두 달성함.

주요 성과로는 교통 인프라 구축, 주차공유사업 초과달성, 불법광고물 정비, 도로열선 설치 및 맞춤형 제설대책 추진, 환경친화적 안양천 조성 등이 있음.

7. 검토 의견

- 2023회계연도 교통건설국 결산 검토 결과,
 - 예산 대비 집행률이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보이나, 일부 집행률이 낮은 사업의 경우 예산 편성의 적정성, 사업 효과를 면밀하게 따져야 할 것이며 다음연도 이월 사업 및 예산 전용의 건은 당초 계획된 사업 집행에 맞게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보며 주차장 특별회계의 미수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세입 확보에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됨.

관계법령

☞ 예산·결산 자료

「지방자치법」 [시행 2024. 5. 17.] [법률 제19951호, 2024. 1. 9., 타법개정]

제150조(결산)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,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그날부터 5일 이내에 시·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, 시·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·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,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「지방재정법」 [시행 2024. 5. 17.] [법률 제19591호, 2023. 8. 8., 타법개정]

제49조(예산의 전용)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
-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·세출결산서에 명시하고,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.

제50조(세출예산의 이월)

-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·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.
- 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.
 1.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
 2.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

- 오랜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
3. 공익·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
4. 정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
- ③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소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연도까지 차레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.
- ④ 제1항 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 할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 별 금액은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.

「지방회계법 시행령」

[시행 2024. 4. 16.] [대통령령 제34408호, 2024. 4. 16., 일부개정]

- 제10조(결산서 등의 제출)**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14조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에 「지방자치법」 제150조제1항 전단에 따른 감사위원(이하 “감사위원”이라 한다)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 12. 16.>
-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결산서와 감사의견서를 받은 경우 받은 날 부터 7일 이내에 감사의견서와 감사위원의 성명을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0년 이상 공개해야 한다. <개정 2024. 4. 16.>

☞ 기금 관련 자료

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

[시행 2023. 7. 10.] [법률 제19430호, 2023. 6. 9., 타법개정]

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

결을 받아야 한다.

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, 새로운 비목(費目)을 설치할 수 없다.

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11.5.30]